

《研究基礎資料：翻譯》90-08

# 蘇聯의 國家非常事態法

1990. 12.

韓國法制研究院



# 蘇聯의 國家非常事態法

(1990年 4月 3日 制定)

第1條 非常事態法은 천재지변·재해·전염병유행 및 대규모 소요시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聯邦憲法에 의거하여 선포되는 限時法이다.

비상사태선포의 목적은 긴급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는데 있다.

第2條 聯邦構成共和國·自治共和國의 最高會議는 전지역 또는 해당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聯邦最高會議와 大統領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會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大統領은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선포지역에 事前通告를 發하고 필요한 경우 最高會議 幹部會 또는 聯邦構成共和國의 국가권력기관의 要求나 同意에 의하여 非常事態를 告知한다.

同意가 없으면 非常事態의 決定은 聯邦最高會議 批准을 받기 위하여 즉각 제출되어 聯邦最高會議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聯邦最高會議는 비상사태의 전지역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3條 非常事態를 선포하는 때에는 宣布理由·效力期間·適用範圍의 영토적 경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聯邦最高會議·大統領·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最高會議는 非常事態 선포후 그 期間이 滿了되기 前에 단축할 수 있으며 非常事態의 상황이 제거되지 않고 기간연장의 절차가 法律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非常事態의 公知·期間의 연장 및 단축에 관한 決定은 다른 시기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채택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며 그러한 決定은 지체없이 公表한다.

第4條 비상사태기간동안 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민의 중대한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공공질서 및 편의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2. 주민의 永久 및 一時的 宿營地에 대한 委任命令과 함께 거주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소개시킨다.
3. 주민의 출입에 특별한 조건을 공지한다.
4. 일정기간 주민들이 특정지역이나 가택에서 떠나는 것을 금지한다.  
非常事態宣布地域에 거주하지 않은 공공질서파괴자를 축출하고 그들의 비용으로 영구거주장소나 비상사태선포지역의 외부로 이주시킨다.
5. 주민으로부터 화기 또는 다른 무기와 탄약을 일시 몰수한다. 企業과 公共團體로부터 군사훈련장비·폭발물·방사성물질·강한 화학독성물질 등을 일시적으로 몰수한다.
6. 연회·스포츠·기타 대규모 행사는 물론 모임·집회·시가행진 및 시위를 금한다.
7. 상품의 생산과 운송을 위해 企業과 公共團體의 계획을 변경하고 특별한 노동조건을 수립하고 경제활동의 여타 문제 또한 결정한다.
8. 企業과 公共團體의 집행부를 임명·해임한다.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正當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탈할 수 없다.
9. 緊急狀況을 보호하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企業과 公共團體의 자원을 이용한다.
10. 龍業을 금한다.
11. 숙련된 주민을 企業 및 公共團體에 노동협력하게하고 緊急狀況의 제거 및 안정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12. 주류와 알코올 함유물질·무기 및 강력한 화학독성 물질의 판매를 제한·금지 한다.
13. 검역을 강제실시하고 공중위생과 전염병 퇴치수단을 강구한다.
14. 라디오·TV보도장비·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장비는 물론 복사장비의 사용을 제한·금지한다. 확성기를 압류하고 뉴스보도를 통제한다.
15. 통신매체사용에 특별한 규칙을 공지한다.
16. 운송수단의 이동을 제한·조사한다.
17. 夜間通行禁止를 실시한다.

18. 緊急狀況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정당·공공단체·대중운동·주민자치단체의 활동을 정지한다.
19. 聯邦法律에 규정되지 않은 民兵隊의 창설 및 활동을 금한다.
20. 공공장소에서 문서를 검열하고 무기소지자에 대한 소지물·운송수단을 검색한다.

第5條 聯邦·聯邦構成共和國·自治共和國의 最高機構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下級官廳의 어떠한 결정도 폐지할 수 있다.

緊急狀況을 예방하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聯邦 閣僚會議,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閣僚會議 그리고 自治地域의 執行委員會는 특별임시관청을 구성할 수 있다.

第6條 비상사태 기간동안 기업과 공공단체의 집행부는 필요한 경우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동의없이 勞動契約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第7條 야간통행금지 실시중 주민은 특별히 발행한 許可身分證 없이 길거리나 다른 공공장소에 갈 수 없으며 거주지역 외부로의 이동을 금한다. 이에 위반한 자는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警察 또는 憲兵에 의해拘留되며 許可身分證을 소지하지 않으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拘留되나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拘留者는 수색에 복종하여야 하며拘留者의 소지물 또한 수색한다.

第8條 前條에 규정한 사항은 물론 第4條의 第3·6·10項, 第12項 내지 第16項에 명시된 사항을 어길 경우 現行刑法에서 그 책임을 묻거나 1000루블의 벌금 또는 15일이하의拘留 및 行政罰을 부과할 수 있다.

第9條 內務局執行委員會·軍隊·民間自治隊 및 공공질서 보호에 공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의 法律과 命令에 지속적으로 복종하지 않거나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해하는 행위나 非常事態가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감독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법질서의 파괴를 선동하고 국민화합을 해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권리행사 및 의무실행을 적극 방해하는 행위는 1000루블의 罰金 또는 최고 30일까지의 行政拘留에 처한다. 위에 언급한 범법행위의 종류에 대한 공식발표는 내무국의 관계공무원이나 당해지역의 사령관에 의해 작성된다.

第10條 非常事態기간동안 기업과 공공단체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된 작업을 일으킨 자는 형사책임을 묻고, 최고 10,000루블의 罰金과 2년이하의 矯正勞動 또

는 3년 이하의 自由權剝奪刑에 처한다.

第11條 緊急狀況의 제거 · 공공질서의 보호 · 시민의 안녕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聯邦 內務部 奉下 軍隊와 聯邦國軍 및 國家安全保障委員會의 軍部隊를 聯邦最高會議 또는 大統領의 決定에 의하여 파견할 수 있다. 이의 군대는 군사규정과 연방내무부 산하부대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행동을 취한다.

第12條 緊急狀況의 제거를 위하여 파견된 군대의 활동과 지휘권을 조정하고 聯邦 內務部와 國家安全保障委員會와의 合同訓練體制를 위하여 연방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최고회의 또는 대통령의 위임에 의거 合同委員會를 구성하고 당해지역에 군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비상사태시 적합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명령 및 규칙을 발한다.

第13條 非常事態宣布時 國防部長官은 聯邦閣僚會議의 결정에 따라 재난 · 재앙 · 유행성전염병 등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예비역장성을 12개월 기간내에서 소집할 수 있다.

第14條 非常事態下에서 聯邦最高會議는 기존의 民 · 刑事 事件의 裁判管轄權을 변경할 수 있다.

第15條 非常事態下에서 손해를 받거나 緊急狀況의 예방 및 제거에 동원된 시민에게 기업 · 공공단체 및 해당관청은 주거지를 공급하며 물질적 손해를賠償하고 직장배정과 기타 도움을 준다.

주택공급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건과 절차는 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閣僚會議에서 정한다.

第16條 非常事態가 선포된 지역에서 국가행정기관이 업무수행의 보장을 못하는 경우 연방대통령은 聯邦構成共和國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유지하는 한, 한시적인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행정관청의 권한은 정지되고 그 기능의 실현을 연방대통령이 창설한 기관이나 그가 임명한 공무원에게 위임된다. 당해기관 및 공무원은 다음에 게기한 권한을 갖는다.

1. 이 법의 第4條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2. 地方소비에트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聯邦 ·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최고행정관청에 정치 · 경제 · 사회 · 문

화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견의한다.

4. 聯邦閣僚會議의 결정 및 그 절차에 따라 당해지역에 속한 기업과 공공단체를 관할하여 둔다.

第17條 聯邦 外務部長官은 비상사태의 宣布·擴大·解除時 이 사항을 UN사무총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朴相哲譯〉

〈參考資料〉

-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XLII, No. 19 (1990)



《研究基礎資料：翻譯》 90-08(通卷 第 8 卷)

# 蘇聯的國家非常事態法 (非賣品)

1990년 12월 15일 이색

1990년 12월 2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인 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03  
전화 : 722-0163~5  
FAX : 722-2900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 호

